

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- 7호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- 91호(2023. 2. 16.)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변경 사항

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정방법 - 양카고정 - 양카길이 8 cm ○ 잠금장치 작동 방식 - 위아래 세대의 잠금장치를 각각 작동하는 방식 ○ SIDE WALL 형상 변경 - FIXED FRAME과 수평형태의 최상단 횡봉 - 횡봉 규격 30 mm * 30 mm 사다리 사용 ○ 마감판 변경 - 앞판의 디자인홀 크기 Ø16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정방법 - 브라켓 매립 방식 - 양카 위치 변경 - 브라켓 길이 30 cm ○ 잠금장치 작동 방식 - 잠금장치 위치변경 및 위아래세대의 잠금장치를 동시에 해제하는 방식 ○ SIDE WALL 형상 변경 - SIDE WALL 락장치 간섭부 굴절 형상 추가 - 횡봉 규격 20 mm * 20 mm 사다리 사용 ○ 마감판 변경 - 디자인 홀 변경, 경량화(2t->1.2t) 	<p>변경인정신청서 내 도면, 사용설명서 및 시험성적서 참고</p>

2. 기타 사항

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(<http://www.molit.go.kr>)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